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96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의자 : 정태호 · 이수진 · 정준호
김주영 · 이학영 · 조정식
이연희 · 김남희 · 김태년
김영진 · 안호영 · 김영환
조승래 · 박민규 · 복기왕
박홍배 · 안도걸 · 정일영
박홍근 · 진성준 · 최기상
오기형 · 이소영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3의2. <u>「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u>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조(비과세)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u> ----- -----
3의3. ~ 12. (생 략)	3의3. ~ 12. (현행과 같음)